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9블록 중흥S-클래스 센텀뷰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12.14.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한다)은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구입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6.12.14.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공급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에 한하여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니,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신설) 대상 부서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신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 및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
-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h9-sclass.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하여 둘다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경기도과천시·성남시·광명시–전역/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부산기장군(민간택지는 제외됨)–공공택지/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전역
    -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대구시 수성구
    -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
  -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와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재당첨제한 규정에 따라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함.
-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이전기관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포함)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본 아파트의 85㎡이하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동안, 85㎡초과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이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101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주택법」 제65조 관련
  -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 호 (2017.12.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9블록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일원)
-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42층 4개동 총 57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 주거시설 1,020대, 비주거시설 159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288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27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5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6세대 포함]

■ 공급규모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그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이전기관종사자등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일반공급	해당동	최하층 우선배정세대	입주예정시기
민영주택	2017001786-01	84.9167	84A,A1	84.9167	25.0358	109.9525	9.6580	55.2268	174.8373	26.9490	159	80	16	16	16	4	27	601동,602동	7	2021년 10월
	2017001786-02	84.5441	84B	84.5441	25.3591	109.9032	9.6157	54.9845	174.5034	26.8307	16	8	2	2	2		2	601동	1	
	2017001786-03	84.7442	84C,C1,C2	84.7442	26.7710	111.5152	9.6384	55.1146	176.2682	26.8942	34	17	3	2	2		10	602동	1	
	2017001786-04	84.9537	84D	84.9537	24.3314	109.2851	9.6622	55.2509	174.1982	26.9607	15	8	2	2	2		1	603동	1	
	2017001786-05	84.9833	84E,E1	84.9833	25.0449	110.0282	9.6656	55.2701	174.9639	26.9701	49	24	4	4	4	2	11	601동	2	
	2017001786-06	101.5170	101A,A1,A2	101.5170	30.0135	131.5305	11.5461	66.0230	209.0996	32.2172	32	16		4		2	10	601동	1	
	2017001786-07	140.8571	140A,A1,A2	140.8571	39.2406	180.0977	16.0205	91.6085	287.7267	44.7021	80	44		8		4	24	603동,604동	3	
	2017001786-08	140.3721	140B,B1,B2	140.3721	39.7658	180.1379	15.9653	91.2930	287.3962	44.5482	94	47		10		4	33	603동,604동	4	
	2017001786-09	140.2011	140C	140.2011	39.0555	179.2566	15.9459	91.1818	286.3843	44.4939	31	16		4			11	603동,604동	2	
	2017001786-10	164.8052	164	164.8052	43.0313	207.8365	18.7442	107.1835	333.7642	52.3022	31	16		4			11	603동,604동	2	
	2017001786-11	107.7593	T107	107.7593	30.9937	138.7530	12.2560	70.0828	221.0918	34.1982	2	1					1	601동,602동		
	2017001786-12	126.5387	T126	126.5387	34.4744	161.0131	14.3920	82.2963	257.7014	40.1580	2	1					1	601동,602동		
	2017001786-13	129.4253	T129	129.4253	38.3689	167.7942	14.7203	84.1736	266.6881	41.0741	1						1	602동		
	2017001786-14	135.6018	T135	135.6018	39.1131	174.7149	15.4228	88.1906	278.3283	43.0343	1						1	601동		
	2017001786-15	147.7214	T147	147.7214	43.6605	191.3819	16.8012	96.0728	304.2559	46.8805	1						1	602동		
	2017001786-16	150.6021	T150	150.6021	40.9282	191.5303	17.1289	97.9463	306.6055	47.7948	2	1					1	601동,602동		
	2017001786-17	152.0714	T152	152.0714	43.2527	195.3241	17.2960	98.9019	311.5220	48.2611	1						1	601동		
	2017001786-18	162.9151	T162	162.9151	47.5657	210.4808	18.5292	105.9542	334.9642	51.7024	1						1	602동		
	2017001786-19	165.3904	T165	165.3904	46.1117	211.5021	18.8109	107.5641	337.8771	52.4879	1						1	601동		
	2017001786-20	175.6266	T175	175.6266	47.0667	222.6933	19.9750	114.2213	356.8896	55.7365	2	1					1	601동,602동		
	2017001786-21	176.2412	T176	176.2412	47.9091	224.1503	20.0449	114.6210	358.8162	55.9315	2	1					1	603동,604동		
	2017001786-22	177.4137	T177	177.4137	51.4571	228.8708	20.1783	115.3836	364.4327	56.3036	1						1	601동		
	2017001786-23	178.5438	T178	178.5438	49.8131	228.3569	20.3068	116.1186	364.7823	56.6623	2	1					1	603동,604동		
	2017001786-24	181.8919	T181	181.8919	53.2240	235.1159	20.6877	118.2961	374.0997	57.7248	1						1	602동		
	2017001786-25	196.8194	T196	196.8194	51.2159	248.0353	22.3854	128.0044	398.4251	62.4622	2	1					1	603동,604동		
	2017001786-26	198.2841	T198	198.2841	58.6866	256.9707	22.5521	128.9570	408.4798	62.9270	1						1	601동		
	2017001786-27	199.2677	T199	199.2677	53.1434	252.4111	22.6639	129.5967	404.6717	63.2392	2	1					1	603동,604동		
	2017001786-28	202.6060	T202	202.6060	60.4642	263.0702	23.0436	131.7678	417.8816	64.2986	1						1	602동		
	2017001786-29	223.9725	T223	223.9725	55.8204	279.7929	25.4738	145.6638	450.9305	71.0795	2	1					1	603동,604동		
	2017001786-30	233.1546	T233	233.1546	61.3390	294.4936	26.5181	151.6355	472.6472	73.9935	2	1					1	603동,604동		
	2017001786-31	235.0286	T235	235.0286	60.8841	295.9127	26.7313	152.8543	475.4983	74.5882	2	1					1	603동,604동		
	2017001786-32	237.8703	T237	237.8703	60.1646	298.0349	27.0544	154.7024	479.7917	75.4900	2	1					1	603동,604동		
	2017001786-33	274.5440	T274	274.5440	72.9500	347.4940	31.2256	178.5537	557.2733	87.1287	1						1	604동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 천원)

주택형	동별(라인별)	타입	공급세대수	층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가격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20%) 1회(10%) 계약시	2회(10%) 2018-05-10	중도금(40%) 1회(10%) 2018-12-10	2회(10%) 2019-07-10	3회(10%) 2020-04-10	4회(10%) 2020-12-10	잔금(40%) 입주지정일
84.9167	601동(1,2호라인) 602동(1,2,3,6,7호라인)	84A 84A1	159	3층	7	62,040	268,960	331,000	33,100	33,100	33,100	33,100	33,100	33,100	132,400
				4층	7	62,040	275,960	338,000	33,800	33,800	33,800	33,800	33,800	33,800	135,200
				5층	7	62,040	282,960	345,000	34,500	34,500	34,500	34,500	34,500	34,500	138,000
				6~18층	91	62,040	289,960	352,000	35,200	35,200	35,200	35,200	35,200	35,200	140,800
				19층이상	47	62,040	300,960	363,000	36,300	36,300	36,300	36,300	36,300	36,300	145,200
84.5441	601동(7호라인)	84B	16	3층	1	61,768	269,232	331,000	33,100	33,100	33,100	33,100	33,100	33,100	132,400
				4층	1	61,768	276,232	338,000	33,800	33,800	33,800	33,800	33,800	33,800	135,200
				5층	1	61,768	283,232	345,000	34,500	34,500	34,500	34,500	34,500	34,500	138,000
				6~18층	13	61,768	290,232	352,000	35,200	35,200	35,200	35,200	35,200	35,200	140,800
84.7442	602동(5호라인)	84C 84C1 84C2	34	3층	1	61,914	274,086	336,000	33,600	33,600	33,600	33,600	33,600	33,600	134,400
				4층	1	61,914	281,086	343,000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37,200
				5층	1	61,914	288,086	350,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40,000
				6~18층	13	61,914	295,086	357,000	35,700	35,700	35,700	35,700	35,700	35,700	142,800
				19층이상	18	61,914	306,086	368,0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147,200
84.9537	603동(7호라인)	84D	15	3층	1	62,067	266,933	329,000	32,900	32,900	32,900	32,900	32,900	32,900	131,600
				4층	1	62,067	273,933	336,000	33,600	33,600	33,600	33,600	33,600	33,600	134,400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해당사항	비고
계	65				
(1) 미성년 자녀수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2) 영유아 자녀수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태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4) 무주택기간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5) 해당 시도 거주 기간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6)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주택소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고시) 3인이하	4인	5인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4,884,448원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630,275원) + [1인당 평균소득(372,914원) * N - 5] (N:6인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원본상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당첨자 동·호수 결정 등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함.
유의사항	•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만 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주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6.12.14.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됨. •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 순위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합니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선정하고,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가점제, 50%를 추첨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	계약시 구비사항
본인 계약시	공통	O		– 계약금 입금 영수증 (당첨자 본인 명의)
		O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O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서명)
		O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O		– 주민등록표등본 1통
			O	– 주민등록초본(1년 이상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O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O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O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로 신청시)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O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전기관	O		–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동·호수 발표일 이후 특별공급대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 기관의 관인 날인된 서류에 한함
	최하층 우선배정	O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만65세이상인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중 신분확인서류로 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O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및 인감도장,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는 동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됨.

■ 계약조건
-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 내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1순위 청약자격 제한대상,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른 예외 사항은 제외)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되면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인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함.
-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 단지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름.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일정기간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내 모든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아파트 외벽면에 건설업체명이나 브랜드명, 심볼과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마을이름과 주동번호만을 표기할 수 있음.
-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명칭제정 자문위원회"에서 1-5생활권은 "한뜰마을"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공부상 주소체계에도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음.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후 도배 등 마감부분에 한하여 재시공될 예정으로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 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선형, 조경(수목,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 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등의 표시, 대지분 및 분양면적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대지면적과 용적율, 건폐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	전체면적	공동주택면적	기부채납면적	상가면적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25,107.0000㎡	21,184.3715㎡	184.2100㎡	3,738.4185㎡	65.7388%	397.7324%

-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단지외부여건
-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 사유가 없음.
-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본 지구는 선 시행된 사업지구이며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 주변 공원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본 아파트 북측 20m도로와 근린공원, 남측 수변공원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서측 수변공원 넘어 현대셀프청사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 본 아파트 서측 약 300m 지점에 성남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종소리 등 학교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본 아파트 남측 수변공원 넘어 최대 상업 시설인 어반아트리움과 도심형주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차후 건설공사로 인한 먼지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본 사업부지 북측으로 주출입구 앞쪽으로 회전식 교차로가 형성될 예정임. • 북측 근린공원, 남측 수변공원의 조성 주체는 LH이고 추후 조성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학교관련 유의사항
- • 초등학교 – '가칭' 나성초, 중학교 – 2학군, 고등학교 – 세종시 전체를 학군으로 하고있음.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신설 '가칭' 나성초등학교임.
-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 신설학교 개교시기 및 학생배치 관련 사항은 학교시설 설치공사 진행상황 및 각종 심의 결과 반영 등에 따라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 •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 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변경,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단지내부여건
-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경관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계획되었으며, 추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주관하는 경관심의를 거쳐 색채 및 경관조명이 변경되어 질 수 있으니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되며, 냉방은 거실은 스탠드, 안방과 침실은 벽걸이형으로 계약자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냉매배관이 설치됨.**
- • **최상층의 옥상과 녹화, 식재 등은 개별 사적 소유물이 아니므로 1층의 녹지공간과 같이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야하고 공공의 목적에 반해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형할 경우 변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 전기 및 통신맨홀 등의 인입위치는 KEPCO(구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동선 및 지하층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 아파트 마감은 전면 커튼월 형식으로 시공 될 예정이며 주동 입면 계획에 따라서 같은 타입에서도 안방 및 침실의 창호 크기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모형 및 CG, 관련 설계도서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판매/근린생활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옥상에는 실외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601동, 602동, 604동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옥상에는 실외기가 설치 될 예정임.
-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 단지 내 출입구 및 도로 등은 아파트/근린생활시설 및 판매/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구획은 불가함.
- • 저층 세대의 경우 단지 및 판매/근린생활시설 이용자들에 의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상호	중봉건설(주)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법인등록번호	200111-0309471
시공회사	상호	중흥토건(주)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나주호로 442-129
	법인등록번호	205511-0004135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h9-sclass.com ▣ 견본주택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중봉건설 시공 중흥토건

분양문의 1577-2264